

보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의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구성 및 권한

제 3 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1 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제 4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, 먼저 선임된 위원,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권한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등기 임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

2. 등기 임원의 보상 체계에 관한 사항
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3 장 회의

제 6 조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,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고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8 조(관계인의 출석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9 조(통지)

위원회는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 각 이사에게 결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보칙

제 10 조(간사)

- ① 위원회는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11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2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5년 4월 [18]일부터 시행한다.